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 창 군 의 회	질문위원	(이만재)위원	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기획감사실장)	일 자	질의	2013년 12월 9일
			답변	2013년 12월10일
회 의	제198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(1)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- 2012년~2013년도 손해배상 및 구상금 집행 내역

답변내용

- 2012~2013년 각종 소송에 따른 배상금 등(305-01)의 총집행액은 783,598천원으로
 - 2012년도 민사소송 8건에 443,998천원,
 - 2013년도 민사소송 6건에 339,600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음.
- ※ 세부 집행내역은 붙임 참조

각종 소송사건에 따른 배상금 등 집행내역(2012~2013)

(단위 : 천원)

일련 번호	사건번호	사건명	사건개요	시작일/ 종료일	당사자 및 소송결과	지출일자	지출액	소관 부서
	소계(2012년도)		8건				443,998	
1	영월지원 2011가단00000호	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	부동산 가등기 계약해제로 가등기 말 소등기절차에 있어서 압류권자인 우리 군의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말소 등기절차 이행가능하므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해 달라는 청구의 소 제기	2011.8.31 / 2011.12.01	○ 원고 : 김00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원고승	2012-02-17	소송비용 752	채무과 (채납)
2	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 (복가소송⇒민사소송)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호 대법원 2011다00000호	부당이득 금반환	군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이 후에 지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 시킨 부분에 대한 대부로 산정이 부당하다 고 개별전후의 처액만큼의 부당이득 주장 반환 소	2010.2.26 / 2012.3.16	○ 원고 : 주식회사 00000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- 1심 : 원고승 - 2심 : 합소기각 - 3심 : 소취하(합의)	2012-03-23	부당이득금 214,000	산림과 (산림수도)
3	영월지원 2011카합00호	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	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권리 민간위탁영역에 대한 입찰자격 제한이 부적절하니 입찰절 차진행을 중지하라는 소	2011.2.10 / 2011.2.18	○ 원고 : 00000000주식회사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인용	2012-05-02	소송비용 814	상하수도 사업소(하 수도)
4	영월지원 2011가합000호	배당이의	부동산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배당 이 잘 못 되었다고 소를 제기	2011.6.15 / 2011.12.20	○ 원고 : 한국0000(주) ○ 피고 : 평창군수 외 1명 ○ 결과 : 원고일부승	2012-05-09	소송비용 382	채무과 (채납관리)

일련 번호	사건번호	사건명	사건개요	시작일/ 종료일	당사자 및 소송결과	지출일자	지출액	소관 부서
5	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	손해배상	토지이용계획 발급에 따른 관리책임	2010.9.15 / 2012.5.11	○ 원고 : 주식회사 00000 외 5명 ○ 피고 : 평창군 외 2명 ○ 결과 : 회해권고결정	2012-05-14	손해배상 52,403	산림과 (산림수도)
6	원주지원 2011가합000호 서울고등법원(출천) 2011나10000호	구상금	토지이용계획 발급(농림지역→관리지 역)에 따른 우리군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	2011.1.21 / 2011.11.23	○ 원고 : 평창군 ○ 피고 : 000 외 3명 ○ 결과 - 1심 : 원고일부승 - 2심 : 기각	2012-05-15	소송비용 11,053	산림과 (산림수도)
7	평창군법원 2011가소0000	구상금	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빙작업 이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어 구상금 청구	2011.11.11 / 2012.04.13	○ 원고 : 전국000000000연합회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회해권고결정	2012-06-19	구상금 4,800	안전건설과 (도로)
8	수원지방법원 2011가합00000호	손해배상 (기)	토지이용계획 발급(농림지역→관리지 역)에 따른 관리책임	2011.10.26 / 2012.08.16	○ 원고 : 이00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원고승	2012-09-20	손해배상 금 등 159,794	산림과 (산림수도)
소계(2013년도)			6건				339,600	
1	영월지원 2012가소0000	구상금	도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차량이 파 손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 음.	2012.08.08 / 2013.01.29	○ 원고 : 000000주식회사 ○ 피고 : 평창군청 ○ 결과 : 회해권고결정	2013-02-28	구상금 450	안전건설과 (도로)

일련 번호	사건번호	사건명	사건개요	시작일/ 종료일	당사자 및 소송결과	지출일자	지출액	수관 부서
2	강릉지원 2011가단10000호 강릉지원 2012나100000	토지 사용 료 등	진부분 하진부리 206-41 외 1필지 119㎡에 대한 도로개설 및 하수관로 매설로 인한 사용료 청구 및 원상복구 요구	2011.6.28 / 2013.05.04	○ 원고 : 김00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- 1심 : 원고일부승 - 2심 : 화해권고결정	2013-06-21	토지임료 등 5,100	도시주택과 (도시개발)
3	서울중앙지법 2013가소00000000	구상금	평창읍 이곡리 고길천 우로 굽은 커브 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 가드레일 등을 충분히 가설하지 않 은 등 도로 안전관리책임을 물어 차량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	2013.06.24 / 2013.08.23	○ 원고 : 000000000주식회사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화해권고결정	2013-08-30	구상금 2,118	안전건설과 (도로)
4	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000000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000000호	소유권이 전등기	진부분 동산리 5번지 외 24필지 10,547㎡ 에 대해 1912년 일제의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를 근거로 소를 제기	2009.7.20 / 2011.11.1	○ 원고 : 000 ○ 피고 : 평창군 외 1 ○ 결과 - 1심 : 원고승 - 2심 : 항소기각	2013-10-04	소송비용 2,969	채무과 (재산관리)
5	영월지원 2011가단10000호	토지인도 등	평창읍 용항리 85-3번지 외 1필지에 1976년경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농수 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수 로 철폐하고 사용료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	2011.8.10 / 2013.7.22	○ 원고 : 이00 ○ 피고 : 평창군 ○ 결과 : 화해권고결정	2013-11-20	토지사용료 1,000	안전건설과 (기반)
6	영월지원 2012가합00 서울고등법원(춘천) 2013나1000	부당이득 반환	군유지 등을 대부분은 점유자가 점유개시 이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 가시킨 부분에 대한 대부분 산정이 부당하 다고 개발전후의 지역민들의 부당이익 주 장 반환 소	2012.1.25 / 2013.10.16	○ 원고 : 00000 ○ 피고 : 평창군 외 2 ○ 결과 - 1심 : 원고일부승 - 2심 : 항소기각	2013-11-27	부당이득금 327,963	채무과 (재산)